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단5913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송아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4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48. 9. 11. 일본인 회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 F 임야 9,3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인안수리조합은 1949. 1.

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G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설치하는 H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 1950. 1. 1. 공사를 시작하여 1956. 12. 31. 이를 준공하였다.

나. 인안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 또는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1970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인수인계되었고, 2000. 1.경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05. 12.경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I은 1962. 4. 7.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62. 5.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1997. 6. 11. 시흥시 F 임야 6,851㎡, J 임야 1,236㎡, K 임야 1,235㎡로 분할되었다.

라. L은 2002. 11. 19. 시흥시 F 임야 6,851㎡를 2002. 10. 8.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7. 7. 시흥시 F 임야 6,851㎡를 M 임야 6,559㎡로 등록전환하였으며, 2010. 5. 3. 이를 시흥시 M 임야 330㎡, N 임야 6,229㎡로 분할하였고, 2011. 12. 6. 위 시흥시 N 임야 6,229㎡를 시흥시 N 임야 1,452㎡, O 임야 491㎡, P 임야 4,286㎡로 다시

분할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9. 22. L으로부터 시흥시 M 임야 330㎡, N 임야 1,452㎡, P 임야 4,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9. 25.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시흥시 M 임야 330㎡, N 임야 1,452㎡를 2017.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L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6. 9. 22. 피고에게 취득세 10,998,220원, 지방교육세 1,099,820원, 농어촌특별세 549,910원 합계 12,647,95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8953호로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법원 2020가단75715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저수지는 행정재산이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I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L,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0. 7.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이므로 대한민국과 I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L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를 하였으나 2021. 8. 19.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부터 저수지 부지로 사용된 행정재산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매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자진신고 납부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부득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행정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L 사이의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L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 원고들은 민법 제569조

내지 제571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점,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원고들과 L 사이의 매매계약에 무효사유 또는 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